



제429회국회(정기회)  
제6차 기획재정위원회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 토 보 고

- 정태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1842호)
- 정부 제출(의안번호 제12651호)

2025.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정지은



# 목 차

|                                                                  |    |
|------------------------------------------------------------------|----|
| I . 개요 .....                                                     | 1  |
| II . 주요 내용별 검토 .....                                             | 4  |
| 1. 납부고지서 일반우편 송달대상 확대(정부안) .....                                 | 4  |
| 2. 납부지연가산세 제도 정비(정부안) .....                                      | 9  |
| 3. 확정신고 기한 내 예정·중간신고의 수정신고 또는 기한후신고시<br>가산세 감면 제도 명확화(정부안) ..... | 22 |
| 4. 국선대리인 지원대상에 고충민원 신청인 포함(정태호의원안, 정<br>부안) .....                | 27 |
| 5.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요청에 대한 보정요구 및 지연통지 신설<br>(정부안) .....              | 35 |



## I. 개요

### 1. 정태호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1842호)

####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정태호의원 등 14인
- (2) 제 안 일 : 2025. 7. 30.
- (3) 회 부 일 : 2025. 7. 31.

#### 나.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현행법은 과세관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등에 대한 불복 절차에서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대상을 이의신청인, 심사·심판청구인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으로 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선대리인 운영의 취지가 영세납세자의 권익 보호임을 고려할 때 불복 청구 기간이 경과하여 고충민원의 방식으로 처분의 취소·변경 등을 요청하는 고충민원 신청인에 대하여도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대상에 고충민원 신청인을 추가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2).

## 2. 정부제출(의안번호 제12651호)

###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정부
- (2) 제 안 일 : 2025. 9. 3.
- (3) 회 부 일 : 2025. 9. 4.

###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납부지연가산세액 산정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계산하여 납부하는 납부지연가산세액의 산정방식을 일(日) 단위에서 월(月) 단위로 변경하고, 납세자 권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세 관련 불복절차에서 국선대리인 선정을 신청할 수 있는 납세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납부지연가산세 산정방식 개선(안 제47조의4제1항 및 제47조의5제1항)

- 1) 납세자 또는 원천징수의무자 등이 납부고지서에 따른 지정납부기한까지 국세 등을 완납하지 아니하여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지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하루 단위로 납부지

연가산세를 산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지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납부지연가산세를 산정하도록 함.

- 2) 납세자가 체납된 국세를 지정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에 따라 독촉을 하는 경우 그 독촉에 드는 비용을 납부지연가산세에 포함하도록 함.

#### 나.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 자격 확대(안 제59조의2제1항)

납세자가 국세 관련 처분 등에 불복하는 경우 이의신청, 행정소송 등의 절차 외에 과세관청에 고충민원\*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국선대리인 선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납세자가 국세 관련 처분 등에 대하여 행정소송 등의 불복 절차를 기한 내에 제기하지 못한 경우 과세관청에 대하여 직권으로 그 처분 등의 취소·변경이나 그 밖의 필요한 처분을 해 줄 것을 요청하는 민원

#### 다.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절차 보완(안 제81조의19제2항 및 제4항 신설 등)

- 1)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납세자가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한 내용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보완기간은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 결과 통지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하도록 함.
- 2)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 결과 통지기간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통지기간을 5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연장하려는 사실과 사유를 납세자에게 통지하도록 함.

## 참고사항

가.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6년도 세입예산  
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나.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안」(의안번호 제12656호) 및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  
호 제1265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  
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1. 납부고지서 일반우편 송달대상 확대(정부안)

| 현 행                                                                                                                                                                                                                                                                                 | 개 정 안                                                                                                                                                                                                                                           |
|-------------------------------------------------------------------------------------------------------------------------------------------------------------------------------------------------------------------------------------------------------------------------------------|-------------------------------------------------------------------------------------------------------------------------------------------------------------------------------------------------------------------------------------------------|
| <input type="checkbox"/> 서류 송달의 방법(제10조)<br>○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 송달의 방법으로 함(제1항)<br>○ 원칙: 등기우편(제2항 본문)<br>- 납부고지·독촉·강제징수 등의 우편 송달<br>○ 예외: 일반우편(제2항 단서)<br>- 「소득세법」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고지서<br>-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예정고지세액의 납부고지서<br>- 과세표준신고서 제출 후 무(과소)납부하여 발급하는 납부고지서<br><u>&lt;신 설&gt;</u> | <input type="checkbox"/> 납부고지서 일반우편 송달대상 확대<br>○ (현행과 같음)<br>○ (현행과 같음)<br>○ 일반우편 송달범위 확대<br>- (현행과 같음)<br>- (현행과 같음)<br>- (현행과 같음)<br>- <u>소득세·법인세 이행 상황 신고 이후 무(과소) 납부하여 발급하는 납부고지서</u><br><input type="checkbox"/> 부 칙<br>○ 시행일: 2026년 1월 1일 |

\* 정부안 2025. 9. 3. 제출(의안번호 12651)

☐ 개정안은 국세(원천징수하는 소득세·법인세)에 대한 원천징수이행 상황신고서를 법정납부기한까지 제출하였으나 신고액에 상당하는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납세고지서를 발송하는 경우로서 50만원 미만의 해당하는 소액 납세고지서<sup>1)</sup>에 대해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sup>2)</sup>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조의2(일반우편 송달의 범위) 법 제10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50만원을 말한다.

- **현행법 제10조<sup>3)</sup>**에서는 서류 송달은 원칙적으로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고, 우편송달의 경우 납세의 고지·독촉·강제징수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를 송달할 때에는 등기우편<sup>4)</sup>으로 하는 것이 원칙임.

### [「국세기본법」 상 송달의 종류]

| 종류            | 송달 방식                                           | 송달 대상                                     |
|---------------|-------------------------------------------------|-------------------------------------------|
| 우편 송달         | 일반우편 또는 등기우편<br>(단, 납부고지, 독촉, 강제징수 등은 등기우편이 원칙) | 송달의 일반적 방식                                |
| 교부 송달         | 공무원이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직접 교부                      |                                           |
| 전자 송달         | 홈택스 또는 납세자가 등록한 전자우편주소로 송달                      | 납부고지서, 국세환급금통지서, 신고안내문, 그 밖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 |
| 공시 송달<br>(예외) | 우편송달 등이 불가능한 경우 서류의 요지를 공고함으로써 송달의 효력 발생        | 납세자의 주소가 국외이거나, 분명하지 않은 경우 등              |

2) ‘서류의 송달’이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행정처분의 내용을 그 행정처분의 대상자 또는 이해관계자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 처분의 내용을 기록한 서류를 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서 전달하는 행정관청의 행위를 말함.

#### 3) 「국세기본법」

**제10조(서류 송달의 방법)** ①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② 납부의 고지·독촉·강제징수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과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고지서, 「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징수하기 위한 납부고지서 및 제22조제2항 각 호의 국세에 대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였으나 과세표준신고액에 상당하는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발급하는 납부고지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에 해당하는 납부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 4) 「우편법 시행령」

**제6조(우편물의 외부 기재사항)** ①우편물의 외부에는 발송인 및 수취인의 성명·주소와 우편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취급과정을 기록하는 우편물(이하 “등기우편물”이라 한다)을 제외한 우편물은 수취인의 성명을 생략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외에 필요한 기재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소득세 중간예납세액 납부고지서<sup>5)</sup>와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의 납부고지서<sup>6)</sup>는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2분의 1을 납부할 세액으로 하여 매년 정기적<sup>7)</sup>으로 고지하고 있어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이 높아 50만원 미만<sup>8)</sup>의 소액 납세고지서에 한해 일반우편으로 송달하고 있음.

또한, 과세표준 확정 신고 후 무(과소)납부에 따른 정기분 납세고

#### 5) 「소득세법」

**제65조(중간예납)**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만이 있는 자와 해당 과세기간의 개시일 현재 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그 과세기간 중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직전과세기간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하 "중간예납기준액"이라 한다)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중간예납세액"이라 하고, 1천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금액은 버린다)을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결정하여 11월 30일까지 그 세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할 거주자에게 11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의 기간에 중간예납세액의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고지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할 거주자가 11월 30일까지 그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중 제77조에 따라 분할납부할 수 있는 세액에 대해서는 납세의 고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1월 15일까지의 기간에 그 분할납부할 수 있는 세액을 납부할 세액으로 하는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6) 「부가가치세법」

**제48조(예정신고와 납부)** ①사업자는 각 과세기간 중 다음 표에 따른 기간(이하 "예정신고기간"이라 한다)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거나 시작하려는 자에 대한 최초의 예정신고기간은 사업 개시일(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 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을 말한다)부터 그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 구분  | 예정신고기간           |
|-----|------------------|
| 제1기 |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
| 제2기 |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이하 "예정신고"라 한다)를 할 때 그 예정신고기간의 납부세액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와 함께 각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제51조의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따른 납부서를 작성하여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이하 "한국은행등"이라 한다)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각 예정신고기간마다 직전(直前)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제46조제1항, 제47조제1항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제2항, 제106조의7제1항에 따라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경감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액을 뺀 금액으로 하고, 제57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과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제45조의2에 따른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에 따른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반영된 금액으로 한다)의 50퍼센트(1천원 미만인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금액은 버린다)로 결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예정신고기간이 끝난 후 25일까지 징수한다. 다만,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30만원 미만이거나 간이과세자에서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7) ○ 소득세 : 11.15.까지 고지서 발부(납부기한: 11.30.)

○ 부가가치세 : (1기) 4.10. (2기) 10.10까지 고지서 발부(납부기한: (1기) 4.25., (2기) 10.25.)

8) 「국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일반우편 발송 가능 금액 기준을 현행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할 예정임.(2025년 세제개편안)

지의 경우 납세자 신고에 의해 확정된 조세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징수절차로, 국세청은 통상 신고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소득세는 8월 15일)까지 고지서를 일반우편으로 발송하고 있음.

이는 납세자가 본인의 신고에 의해 확정된 조세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징수절차를 위한 납세고지서 발송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어, 등기우편이 아닌 일반우편으로 발송하여도 납세자의 권익 침해 가능성이 낮기 때문임.

현행 제22조제4항제2호9)에 따른 국세(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자진신고 한 뒤 무(과소) 납부한 때의 50만원 미만의 고지의 경우 일반우편 송달 관련 규정이 없어 등기우편으로 송달하고 있는 문제가 있음.

특히, 고정된 체류지가 없는 납세자의 경우 반송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부재시 반복송달에 따른 행정비용이 증가하는 한편, 납세자는 반송된 우편물을 수령하기 위해 우체국을 방문해야 하는 등 불편이 초래되고 있음.

□ 이에 개정안은 소득세·법인세 등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이후 무(과

---

9) 「국세기본법」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 ④ 다음 각 호의 국세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

1. 인지세
2.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3.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4. 중간예납하는 법인세(세법에 따라 정부가 조사·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제47조의4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제47조의5에 따른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후의 가산세로 한정한다)

소) 납부하여 발급하는 납부고지서에 대해서도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후에는 과세표준 신고자와 마찬가지로 무(과소) 납부 시 납부고지서 발송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으며, 원천징수는 중간예납·예정고지와 같이 주기적이고 반복적인 성격을 갖는다는 점에서 납부고지서 발송의 예측가능성이 높음.

또한, 원천징수 미납부분에 대한 고지는 새로운 세액을 부과하는 처분이 아니라 기존 납부 의무에 따른 징수고지<sup>10)</sup> 목적이므로 일반우편으로도 효과적으로 목적달성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납세고지서의 일반우편 송달대상을 확대하려는 개정안은 필요한 입법조치로 판단됨.

□ 참고로, 국세청에 따르면, 개정안 통과 시 절감되는 납세고지서 송달 예산액은 연간 35억원<sup>11)</sup> 정도로 추계되는데, 납세고지서 송달 예산을 절감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
|--------------|
| 문 의 처        |
| 02)6788-5147 |

10) 원천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한 세액의 지급을 구하는 고지이므로 송달이 없더라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자동으로 확정됨(대법원 1996.3.12. 선고 95누4056 판결)

11) 35억원 = 146만건(원천 무납부 고지) × 2,400원(등기 2,830원 - 일반 430원)

## 2. 납부지연가산세 제도 정비(정부안)

| 현 행                                                                                                                                                                                                                                                                                                           | 개 정 안                                                                                                                                                                                                                                                                                                                                                                                              |
|---------------------------------------------------------------------------------------------------------------------------------------------------------------------------------------------------------------------------------------------------------------------------------------------------------------|----------------------------------------------------------------------------------------------------------------------------------------------------------------------------------------------------------------------------------------------------------------------------------------------------------------------------------------------------------------------------------------------------|
| <input type="checkbox"/> 납부지연가산세(제47조의4제1항)<br>○ 지연이자 상당액(제1호·제2호)<br>1. 미납세액* × ( <u>법정납부기한 ~ 납부일</u> ) × 0.022%<br>* 매 1일(日) 경과시마다<br><u>&lt;신 설&gt;</u><br>2. 초과환급세액* × ( <u>법정납부기한 ~ 납부일</u> ) × 0.022%<br>* 매 1일(日) 경과시마다<br><u>&lt;신 설&gt;</u><br>○ 체납에 대한 제재(제3호)<br>- 미납세액 × 3%<br><u>&lt;신 설&gt;</u> | <input type="checkbox"/> 납부지연가산세 제도 정비<br>○ 체납 이후 산출 단위 변경<br>1. 미납세액* × ( <u>법정납부기한 ~ 납부고지일</u> ) × 0.022%<br>* 매 1일(日) 경과시마다<br>1의2. 미납세액* × ( <u>지정납부기한 ~ 납부일</u> ) × 0.67%<br>* 매 1월(月) 경과시마다<br>2. 초과환급세액* × ( <u>법정납부기한 ~ 납부고지일</u> ) × 0.022%<br>* 매 1일(日) 경과시마다<br>2의2. 초과환급세액* × ( <u>지정납부기한 ~ 납부일</u> ) × 0.67%<br>* 매 1월(月) 경과시마다<br>○ (현행과 같음)<br>- (현행과 같음)<br>○ <u>독촉장 송달비용(제4호)</u> |
| <input type="checkbox"/>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제47조의5제1항)<br>1. 미납세액 × 3%<br>2. 미납세액* × ( <u>법정납부기한 ~ 납부일</u> ) × 0.022%<br>* 매 1일(日) 경과시마다<br><u>&lt;신 설&gt;</u><br><br><u>&lt;신 설&gt;</u>                                                                                                                          | <input type="checkbox"/> 납부지연가산세 제도 정비<br>1. (현행과 같음)<br>2. 미납세액* × ( <u>법정납부기한 ~ 납부고지일</u> ) × 0.022%<br>* 매 1일(日) 경과시마다<br>3. 미납세액* × ( <u>지정납부기한 ~ 납부일</u> ) × 0.67%<br>* 매 1월(月) 경과시마다<br>4. <u>독촉장 송달비용</u><br><input type="checkbox"/> 부 칙<br>○ 시행일: 2026년 7월 1일<br>○ 경과조치: 2026년 6월 30일 이전에 지정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 종전 규정 적용                                                                         |

\* 정부안 2025. 9. 3. 제출(의안번호 12651)

## 가. 지정납부기한 이후 납부지연가산세 산출방법 개편

□ 개정안은 지정납부기한<sup>12)</sup>이 경과된 이후부터 납부일까지 발생하는 납부지연가산세(이하 “가산세”라 함)를 현행 일(日) 단위로 산출하는 방식에서 매 1개월(月)이 경과하는 때마다 산출하는 방식으로 체납 이후 산출 단위를 변경하려는 것임.

□ 현행법 제47조의4<sup>13)</sup>에서는 납세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국세를 미납 또는 과소납부하거나 초과 환급받은 경우에는 해당 세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하고 있고, 제47조의5<sup>14)</sup>에서는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가 징

### 12) 「국세징수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납부기한”이란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가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납부하여야 할 기한으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한을 말한다.
  - 가. 법정납부기한: 국세의 종목과 세율을 정하고 있는 법률,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기한
  - 나. 지정납부기한: 관할 세무서장이 납부고지를 하면서 지정한 기한

### 13)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법정납부기한까지 국세(「인지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인지세는 제외한다)의 납부(중간예납·예정신고납부·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 초과환급받은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3.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중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100분의 3(국세를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 14)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①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제2항제2호의 경우에는 징수한 세액)을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50(제1호의 금액과 제2호 중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고지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은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

수하여야 할 세액을 법정납부기한까지 미납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가산세를 징수하고 있음.

이는 지연이자 상당액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말하며, 체납에 대한 제재 성격의 가산세는 미납세액의 3/100을 가산세로 하여 별도로 부과할 수 있음.

구체적으로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에 따른 미납·과소납부분 세액 또는 초과환급세액과 제47조의5(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에 따른 미납·과소납부분 세액에 대하여는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을 곱하여 지연이자 성격의 가산세가 일할 계산방식(1일 0.022%)으로 부과되고 있음.<sup>15)</sup>

### [현행 납부지연가산세 및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체계]

| (1) 미납 또는 과소납부한 경우 (제47조의4제1항제1호 및 제3호) |                                                                                 |
|-----------------------------------------|---------------------------------------------------------------------------------|
| 납부지연가산세<br>= ①+②                        | ① 국세를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한 경우<br>: 지연일수분 = 미납세액(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미납기간 × 0.022% |
|                                         | ② 국세를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은 경우<br>: 체납분 = 미납세액(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3%             |
| (2) 초과환급받은 경우 (제47조의4제1항제2호 및 제3호)      |                                                                                 |
| 납부지연가산세<br>= ①+②                        | ① 국세를 초과환급받은 경우<br>: 초과환급일수분 = 초과환급받은 세액 × 미납기간 × 0.022%                        |
|                                         | ② 국세를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은 경우<br>: 체납분 = 미납세액(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3%             |

2.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15)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및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의 이자율) 법 제47조의4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7조의5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1일 10만분의 22의 율을 말한다.

| (3)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제47조의5제1항제1호 및 제2호) |                                                                                             |                               |
|-----------------------------------------|---------------------------------------------------------------------------------------------|-------------------------------|
| 원천징수 등<br>납부지연가산세<br>= MIN(①,②)         | ① (= ㉠ + ㉡)                                                                                 | ㉠ 미납세액·과소납부분 세액 × 3%          |
|                                         |                                                                                             | ㉡ 미납세액·과소납부분 세액×미납기간 × 0.022% |
|                                         | ② 미납세액·과소납부분 세액 × 50%<br>(위 ㉠의 금액과 ㉡ 중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고지일<br>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은 10%) |                               |

한편, 실제 납부고지서에는 본세와 납부고지일까지의 납부지연가산세 등을 포함한 납부세액이 국세청에서 계산·결정되어 고지되고 있으나, 체납 발생 이후부터 지정납부기한 이전까지는 납부지연가산세의 납세의무가 아직 성립하지 않아 국세청이 납부세액을 결정·고지할 수 없으므로, 납부고지서 서식에는 가상의 금액 예시만 안내되고 있음.

#### [지정납부기한 경과 후 납부할 금액(예시)]

|       |           |       |           |       |           |
|-------|-----------|-------|-----------|-------|-----------|
| 1일 후  | 1,539,280 | 11일 후 | 1,542,080 | 21일 후 | 1,544,880 |
| 2일 후  | 1,539,560 | 12일 후 | 1,542,360 | 22일 후 | 1,545,160 |
| 3일 후  | 1,539,840 | 13일 후 | 1,542,640 | 23일 후 | 1,545,440 |
| 4일 후  | 1,540,120 | 14일 후 | 1,542,920 | 24일 후 | 1,545,720 |
| 5일 후  | 1,540,400 | 15일 후 | 1,543,200 | 25일 후 | 1,546,000 |
| 6일 후  | 1,540,680 | 16일 후 | 1,543,480 | 26일 후 | 1,546,280 |
| 7일 후  | 1,540,960 | 17일 후 | 1,543,760 | 27일 후 | 1,546,560 |
| 8일 후  | 1,541,240 | 18일 후 | 1,544,040 | 28일 후 | 1,546,840 |
| 9일 후  | 1,541,520 | 19일 후 | 1,544,320 | 29일 후 | 1,547,120 |
| 10일 후 | 1,541,800 | 20일 후 | 1,544,600 | 30일 후 | 1,547,400 |

주: 세목별 고지세액 150만원(가산세 20만원 포함)을 지정납부기한 후에 납부하는 경우

즉, 지정납부기한 이후에 체납세액과 납부지연가산세를 납부하는 납세자는 본인이 직접 납부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해야 하며, 과세관

청은 그 계산과 납부의 적정성을 검증하고 있음.

이처럼, 지정납부기한 이후부터는 1일 단위로 납세자가 직접 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해야 하는 방식이 납세자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개정안은 이자 상당액에 해당하는 납부지연가산세를 ①법정 납부기한 경과후 부터 납부고지일까지, ②지정납부기한 경과후 부터 납부일까지로 구분하고, 납세의무자가 직접 계산하고 납부해야 하는 지정납부기한 경과후의 가산세에 대해서만 가산세 산정방식을 월(月) 단위로 변경하려는 것임.

[납부지연가산세 산출방법 비교]

|     | 법정납부기한                          | 납부고지일 | 지정납부기한                                | 납부일 |
|-----|---------------------------------|-------|---------------------------------------|-----|
| 현행  | 1일당 0.022%<br><국세청 계산><br>..... | X     | 1일(日)당 0.022% <납세자 직접 계산><br>.....    |     |
| 개정안 | (상 동)<br>.....                  | X     | 1월(月)당 0.67% <납세자 직접 계산><br>● ● ● ... |     |

주: 납부고지일부터 지정납부기한까지는 납세자에게 납부의무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부여한 것으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음.

-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됨.

첫째, 지정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월 단위의

가산세율(0.67%)을 적용함으로써, 가산세액의 산출 방식이 간소화되는 효과가 있음.

현행 제도하에서는 납세의무자가 체납 발생 이후 지정납부기한 경과 후에는 미납세액에 대해 가산세를 1일 단위(0.022%)로 계산해야 하며, 이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체납 일수를 정확히 산정하고, 해당 일수에 일할 가산세율을 곱해 직접 계산·신고하는 절차가 요구됨.

이 과정은 금액이 크거나 체납 기간이 길어질 경우 혼선이 발생하거나 실무적인 오류가 증가하는 원인이 되고 있음.

반면,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납세의무자는 지연된 개월 수만 확인한 후 미납세액에 월 단위 가산세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쉽게 지정납부기한 경과 후 가산세 총액을 산출할 수 있게 됨.

이로 인해 산출 방식이 간단해지고, 신고·납부 과정에서의 오류 발생 가능성도 실질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기대됨.

둘째, 개정안과 같이 해당 가산세를 월 단위로 계산할 경우 지정납부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완납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면제되는 효과가 있음.

기존의 일할 계산방식에서는 지정납부기한이 하루만 지나도 ‘미납세액 × 0.022% × 일수’ 만큼의 가산세가 자동으로 부과되어, 며칠 늦게 납부하더라도 납세의무자는 세부담이 증가하는 불이익이 있음.

반면, 개정안에서 도입되는 월 단위 산출방식은 지정납부기한이 경과한 후 1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만 미납세액을 완납하면, 해당 기간에 대해서는 별도의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하여 단기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이 완화되고, 납세의무자의 납부 유인을 제고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지정납부기한이 1개월 경과할 때마다 고정된 월 단위 가산세율(0.67%)을 적용하는 방식은 지정납부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완납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체납자에게 과도한 편의를 제공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이러한 구조는 납세의무자 입장에서는 일시적으로 자금 사정 등으로 인해 납부를 미루더라도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다고 인식될 수도 있을 것임.

특히, 모든 납세의무자에게 동일하게 1개월 간의 무가산세 기간이 일률적으로 적용될 경우, 실제로 자금사정이 어려운 납세자뿐만 아니라, 납세능력이 충분한 자까지 이를 ‘무이자 체납’의 수단으로 전략적으로 활용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움.

결과적으로 이는 납세 여건과 관계없이 모든 납세의무자가 1개월 간 납부를 유예할 수 있어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둘째, 지정납부기한 이후 가산세의 산출방식이 월 단위로 변경될 경우, 납부시점에 따라 납부지연가산세의 금액이 달라지는 구조로 전환되어 납세의무자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예를 들어, 미납세액이 1,000만원인 경우를 가정하면, 현행 제도에서는 1일 단위로 산출되어 31일 체납 시 68,200원, 59일 체납 시 129,800원의 가산세가 부과되는 반면, 개정안과 같이 월 단위로 계산할 경우에는 31일 체납 시와 59일 체납 시 모두 67,000원으로 동일하게 산출되어, 납부시점에 따라 가산세액이 달라지고 체납액 규모가 클수록 납세자 간 납부시점에 따른 세부담 격차가 크게 나타나는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 [납부지연가산세 효과 비교]

| 구분   | 현행                                                                   | 개정안                                                                |
|------|----------------------------------------------------------------------|--------------------------------------------------------------------|
| 산출방식 | 1일(日)당 0.022%                                                        | 1월(月)당 0.67%                                                       |
| 예시1  | 미납세액 1,000만원을 31일 체납 시                                               |                                                                    |
|      | $1,000\text{만 원} \times 0.022\% \times 31\text{일} = 68,200\text{원}$  | $1,000\text{만 원} \times 0.67\% \times 1\text{개월} = 67,000\text{원}$ |
| 예시2  | 미납세액 1,000만원을 59일 체납 시                                               |                                                                    |
|      | $1,000\text{만 원} \times 0.022\% \times 59\text{일} = 129,800\text{원}$ | $1,000\text{만 원} \times 0.67\% \times 1\text{개월} = 67,000\text{원}$ |

참고로,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납부지연가산세 산출방식 변경에 대한 비용추계 결과, 가산세율 조정으로 인해 일 단위 계산방식보다 월 단위 계산방식 적용 시 평균적으로 세수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설정되어 있음.<sup>16)</sup>

16) 연간 약 2억원 = 약 4,000억원  $\times$  0.056% (2021년~2023년 납부지연가산세 평균 : 약 4,000억원)

## [납부지연가산세 산출방식 변경에 따른 비용추계 결과]

(단위: 억원)

| 구 분 | 2026 | 2027 | 2028 | 2029 | 2030 |
|-----|------|------|------|------|------|
| 수입  | 1    | 2    | 2    | 2    | 2    |

주: 가산세율 변화율 :  $+0.056\% = (0.67 - 0.669625) / 0.669625$

\* 같은 기간으로 비교하기 위해 현행 가산세율을 월로 환산:  $0.022 \times 365.25(4\text{년에 한번 } 366\text{일}) \div 12(\text{개월}) = 0.669625$

자료: 기획재정부

□ 한편, 개정안은 현행법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및 제47조의5(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의 납부지연가산세 산출방법을 개편하면서, 동법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sup>17)</sup>를 개편된 산출방법에 맞게 함께 개정하는데 이는 공포 후 시행 전 법률<sup>18)</sup>에 해당하여 공포 후 시행 전 법률과 현행 법률을 같이 개정해야 할 것으로 보임. 왜냐하면, 동법 제21조는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도 함께 규정하고 있고 법률 제9346호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이

### 17) 「국세기본법」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② 제1항에 따른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1. 가산세: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기. 다만, 나목과 다목의 경우 제39조를 적용할 때에는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이하 “법정납부기한”이라 한다)이 경과하는 때로 한다.

가. 제47조의2에 따른 무신고가산세 및 제47조의3에 따른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하는 때

나. 제47조의4제1항제1호·제2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제47조의5제1항제2호에 따른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법정납부기한 경과 후 1일마다 그 날이 경과하는 때

다. 제47조의4제1항제3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경과하는 때

라. 제47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법정납부기한이 경과하는 때

마. 그 밖의 가산세: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 18) 「국세기본법」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② 제1항에 따른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5. 개별소비세·주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 과세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때, 과세장소에 입장하거나 과세유흥장소에서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때 또는 과세영업장소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때. 다만,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를 말한다.

### 법률 제9911호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2028.1.1 시행)

5. 개별소비세·주세: 과세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때, 과세장소에 입장하거나 과세유흥장소에서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때 또는 과세영업장소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때. 다만,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를 말한다.

2028년 1월 1일에 폐지될 예정인데, 이에 따라 동법 제21조의 시행  
일도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의 폐지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규  
정되어 있기 때문임.

## 나. 독촉장 송달비용을 납부지연가산세에 포함

□ 개정안은 「국세징수법」 제10조<sup>19)</sup>에 따른 독촉에 드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납부지연가산세에 포함하려는 것임.

2024년 기준 독촉장 송달방식별 비용은 등기우편의 경우 2,830원, 일반우편의 경우 430원이며, 체납된 국세의 납부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150만원 이상<sup>20)</sup>인 경우에는 모두 등기우편<sup>21)</sup>으로 발송되고 있음.

국세청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체 독촉장 발송 건수는 472만 4천 건이며, 이 중 약 40%에 해당하는 190만 8천건이 150만원 이상의 독촉장에 해당함.

□ 가산세의 정의<sup>22)</sup> 및 그 도입 취지에 비춰볼 때 납부의무의 성실한

### 19) 「국세징수법」

**제10조(독촉)** ①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국세를 지정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체납된 국세에 대한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에 따라 국세를 납부기한 전에 징수하거나 체납된 국세가 일정한 금액 미만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독촉장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 본문에 따라 독촉장을 발급하는 경우 독촉을 하는 날부터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한을 정하여 발급한다.

### 20)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⑧ 체납된 국세의 납부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1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7조의5(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⑤ 체납된 국세의 납부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1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제2호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21) 「국세기본법」

**제10조(서류 송달의 방법)** ② 납부의 고지·독촉·강제징수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과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고지서, 「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징수하기 위한 납부고지서 및 제22조제2항 각호의 국세에 대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였으나 과세표준신고액에 상당하는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발급하는 납부고지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에 해당하는 납부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 22) 「국세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가산세”(加算稅)란 이 법 및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법에 따라 산

이행을 유도하기 위해서 행정비용을 포함하는 것은 정당한 측면이 있음.

특히, 무(과소) 납부로 인해 발생한 독촉장 송달비용은 해당 체납자가 부담하는 것이 ‘사용자부담 원칙’에 부합하므로, 독촉장 송달비용을 납부지연가산세에 포함하려는 개정안은 합리적인 조치로 보임.

이를 통해 체납으로 인해 발생하는 송달비용을 실제 행정비용 유발 주체인 체납자가 부담하게 함으로써, 납세 유인구조를 개선하고 납세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며, 궁극적으로 과세 형평성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또한, 가산세를 해당 의무위반이 관련된 국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도록 한 취지로 보면, 가산세는 한편으로 조세의 한 종목으로서의 성격도 지니고 있고, 다른 한편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의 이중적 성격을 지니고 있음.<sup>23)</sup>

따라서, 가산세는 개별세법이 과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정한 의무의 이행을 확보할 목적으로 이들 의무를 해태하였을 때 그에 대하여 가하여지는 일종의 행정법적인 성격을 가지는 제재로 볼 수도 있어, 독촉장 송달비용을 납부지연가산세에 포함함으로써 신

---

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23) 대법원 2002.11.13. 선고 2001두1918 판결

고납부의무의 위반에 대해 부과되는 특별한 경제적 부담이라 할 것임.

- 다만, 국세행정비용을 체납자에게 전가시키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고, 오히려 체납자의 반감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sup>24)</sup>

참고로, 독촉장 송달비용을 납부지연가산세에 포함할 경우 연간 18억원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추계됨.

[독촉장 송달비용의 납부지연가산세 포함에 따른 비용추계 결과]

(단위: 억 원)

| 구 분 | 2026 | 2027 | 2028 | 2029 | 2030 |
|-----|------|------|------|------|------|
| 수입  | 9    | 18   | 18   | 18   | 18   |

주: 2,830원 × 191만건 × 1/3(징수비율) = 18억원

자료: 기획재정부

문 의 처

02)6788-5147

24) 한국세무사회의 의견임.

### 3. 확정신고 기한 내 예정·중간신고의 수정신고 또는 기한후신고 시 가산세 감면 제도 명확화(정부안)

| 현 행                                                                                                                                                                                                                                                                                                                                                                       | 개 정 안                                                                                                                                                                                                                                                                                                     |
|---------------------------------------------------------------------------------------------------------------------------------------------------------------------------------------------------------------------------------------------------------------------------------------------------------------------------------------------------------------------------|-----------------------------------------------------------------------------------------------------------------------------------------------------------------------------------------------------------------------------------------------------------------------------------------------------------|
| <input type="checkbox"/> 가산세 감면 등(제48조)<br>○ 예정·중간신고의 수정신고·기한 후 신고시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 50% 감면(제2항제3호)<br>- 과세전적부심사 지연결정에 따른 감면(가목)<br>- 기한 경과 후 1개월내 지연협력에 대한 감면(나목)<br>- 수정신고에 대한 감면(다목)<br>· 예정신고기한 및 중간신고기한까지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br>· <u>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을 수정하여 신고한 경우</u><br>- 기한 후 신고에 대한 감면(라목)<br>· 예정신고기한 및 중간신고기한까지 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br>· <u>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를 한 경우</u> | <input type="checkbox"/> 가산세 감면 제도 명확화<br>○ 용어 명확화<br>- (현행과 같음)<br>- (현행과 같음)<br>- 수정신고에 대한 감면<br>· (현행과 같음)<br>· <u>확정신고기한까지 예정신고 및 중간신고한 과세표준을 수정하여 신고한 경우</u><br>- 기한 후 신고에 대한 감면<br>· (현행과 같음)<br>· <u>확정신고기한까지 예정신고 및 중간신고의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u><br><input type="checkbox"/> 부 칙<br>○ 시행일: 2026년 1월 1일 |

\* 정부안 2025. 9. 3. 제출(의안번호 12651)

☐ 개정안은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에 대한 가산세 감면 시 ① 수정신고에 대한 감면 요건 중 ‘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를 한 경우’를 ‘확정신고기한까지 예정신고 및 중간신고한 과세표준을 수정하여 신고한 경우’로, ②기한 후 신고에 대한 감면 요건 중 ‘확

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를 한 경우’를 ‘확정신고기한까지 예정신고 및 중간신고의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로 규정하려는 내용임.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가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어, 납세자와 행정기관 모두에게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 현행법 제48조제2항<sup>25)</sup>에서 ①예정신고기한 및 중간신고기한까지 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하였으나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

25)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②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해당 가산세액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1.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경우(제47조의3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  
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  
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마.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자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제47조의2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다. 제1호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세법에 따른 예정신고기한 및 중간신고기한까지 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하였으나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로서 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을 수정하여 신고한 경우(해당 기간에 부과되는 제47조의3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제2호에도 불구하고 세법에 따른 예정신고기한 및 중간신고기한까지 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를 한 경우(해당 기간에 부과되는 제47조의2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우로서 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을 수정하여 신고한 경우, ②에  
정신고기한 및 중간신고기한까지 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하지 아  
니하였으나 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를 한 경우에 해당 가  
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하도록 하고 있음.<sup>26)</sup>

□ 그러나,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에 대한 가산세 감면 조항은  
본래 확정신고 기한 내 예정·중간신고의 수정신고<sup>27)</sup> 또는 기한 후  
신고<sup>28)</sup> 시에만 가산세를 감면하려는 입법취지와 달리 ‘확정신고기  
한까지 과세표준신고<sup>29)</sup>를 한 경우’에는 예정·중간신고의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와 확정신고까지 모두 포함하는 다의적인 의미  
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실제 적용 과정에서 해석상 혼란이 발생하  
고 있음.<sup>30)</sup>

26) 가산세 감면 제도는 예정·중간신고의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에 대한 가산세 감면 여부가 불명확하  
다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18년에 도입되었음.

27) 「국세기본법」

**제45조(수정신고)**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소득세법」 제73조제1항제1호부터 제  
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각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  
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으로서 제26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  
여야 할 결손금액이나 환급세액을 초과할 때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원천징수의무자의 정산 과정에서의 누락, 세무조정 과정에서의 누락 등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불완전한 신고를 하였을 때(제45조의2에 따라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경  
우는 제외한다)
- ② 삭제
- ③ 과세표준수정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신고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8) 「국세기본법」

**제45조의3(기한 후 신고)** ①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세  
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29) 「국세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5. “과세표준신고서”란 국세의 과세표준과 국세의 납부 또는 환급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신고서를 말한다.

30) 확정신고를 포함하여 가산세 감면이 가능하다고 본 국세청 해석 사례(서면-2023-정세-1249) : 양도소득과  
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지 않고, 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를 한 경우에는 국기법§48②3호라목의 가산세

특히, 예정·중간신고를 수정신고하거나 기한 후에 신고한 후, 다시 확정신고에서 과세표준을 정정하여 신고할 경우, 일선에서는 확정 신고를 기준으로 예정·중간신고분 가산세를 감면한 사례가 있음.

하지만, 2011년 세법 개정을 통해 예정·중간신고에 대해서도 신고 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sup>31)</sup>됨을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예정·중간신고를 기한 내 하지 않거나 미흡하게 할 경우 확정신고와 별도로 해당 신고분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원칙임.

또한, 최근 국세청 국세법령해석심의위원회도 확정신고만 한 경우 예정신고분의 무신고 가산세를 감면할 수 없다고 해석을 변경하였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도 있을 것임.<sup>32)</sup>

□ 이에 개정안은 예정·중간신고의 경우에도 확정신고의 법정신고기한

---

감면이 적용 가능함.

31)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법정납부기한까지 국세(「인지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인지세는 제외한다)의 납부(중간예납·예정신고납부·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32)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없이 확정신고만 한 경우 예정신고분의 무신고 가산세를 감면할 수 없다(국세법령해석심의위원회, 2024.8.)

까지 예정·중간신고를 수정신고하거나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에만  
가산세 감면이 적용됨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즉, ‘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를 한 경우’를 ‘확정신고의 법  
정신고기한<sup>33)</sup>까지 예정·중간신고의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로 구체화함으로써 확정신고 자체는 예정·중간신고분 가산  
세 감면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한다는 점에서 필요한 조치로 보임.

또한, 예정·중간신고는 개념상 확정신고와는 별개의 절차로서 하나  
의 세목에 서로 다른 법정신고기한이 적용되므로,<sup>34)</sup> 확정신고의 법  
정신고기한 기준으로는 예정·중간신고 감면규정 적용이 불가한 측  
면이 있음을 고려해야 할 것임.

문 의 처

02)6788-5147

### 33) 「국세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6. “법정신고기한”이란 세법에 따라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기한을 말한다.

### 34) 「부가가치세법」

**제48조(예정신고와 납부)** ①사업자는 각 과세기간 중 다음 표에 따른 기간(이하 “예정신고기간”이라 한다)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  
급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거나 시작하려는 자에 대  
한 최초의 예정신고기간은 사업 개시일(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 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  
우에는 그 신청일을 말한다)부터 그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 구분  | 예정신고기간           |
|-----|------------------|
| 제1기 |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
| 제2기 |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

**제49조(확정신고와 납부)**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  
간이 끝난 후 25일(폐업하는 경우 제5조제3항에 따른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8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사업자 또는 제59조제2항에 따라 조기에 환급을 받기 위하여 신고한 사업자는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과 납부한 납부세액 또는 환급받은 환급세액은 신고하지 아니한다.

#### 4. 국선대리인 지원대상에 고충민원 신청인 포함(정태호의원안, 정부안)

| 현 행                                                                                                                                                                                                                                                                         | 개 정 안                                                                                                                                                                                                                                                                    |
|-----------------------------------------------------------------------------------------------------------------------------------------------------------------------------------------------------------------------------------------------------------------------------|--------------------------------------------------------------------------------------------------------------------------------------------------------------------------------------------------------------------------------------------------------------------------|
| <input type="checkbox"/> 국선대리인(제59조의2)<br><br>○ 국선대리인 신청 범위<br>- <u>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u><br><br>○ 국선대리인 신청 요건<br>- 개인: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 소유재산 가액이 5억원 이하<br>- 법인: 수입금액이 3억원 이하, 자산 가액이 5억원 이하<br>- 5천만원 이하인 신청·청구일 것<br>- 상속세, 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가 아닌 세목에 대한 신청·청구일 것 | ○ 조세불복 시 국선대리인 지원대상에 고충민원 신청인 포함<br><br>○ 국선대리인 신청 범위 확대<br>- <u>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 고충민원 신청인</u><br><br>○ (현행과 같음)<br><br><input type="checkbox"/> 부 칙<br>○ 시행일<br>- 2026년 1월 1일(정부안)<br>- 공포 후 3개월(정태호의원안)<br><br>○ 적용례: 법 시행 이후 고충민원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정태호의원안) |

\* 정태호의원안 2025. 7. 30. 발의(의안번호 11842), 정부안 2025. 9. 3. 제출(의안번호 12651)

☐ 현행법은 조세불복 절차(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및 과세전적부심사)에서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납세자가 국선대리인을 선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러한 국선대리인 지원대상에 고충민원 신청인도 포함하려는 것임.

□ 국선대리인 제도는 영세납세자가 과세전적부심·이의신청·심사청구를 제기한 경우, 국선대리인의 무료 불복대리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현행법 제59조의2<sup>35)</sup>에 따라 2014년 처음 도입되었음.

신설 당시에는 이의신청과 심사청구에 대하여만 국선대리인 제도가 인정되었으나, 2016년 개정으로 심판청구까지 적용 범위가 확대되었고, 2019년 개정으로 과세전적부심사에도 국선대리인 제도가 적용되고 있음.

국선대리인은 변호사, 세무사 또는 「세무사법」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하고, 영세납세자를 위하여 법령 검토 및 자문, 증거자료 수집 등 불복청구의 대리업무를 수행함.

한편, 2024년 12월말 현재 전국에서 320명의 국선대리인<sup>36)</sup>이 활동하고 있음.

35) 「국세기본법」

**제59조의2(국선대리인)** ①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심판청구인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이하 이 조에서 “이의신청인등”이라 한다)은 재결청(제81조의15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호사, 세무사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공인회계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대리인(이하 “국선대리인”이라 한다)으로 선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1. 이의신청인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개인인 경우: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금액과 소유 재산의 가액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일 것

나. 법인인 경우: 수입금액과 자산가액(「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과 자산을 말한다)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일 것

2. 삭제 <2023. 12. 31.>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신청 또는 청구일 것

4. 상속세, 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가 아닌 세목에 대한 신청 또는 청구일 것

② 재결청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체 없이 국선대리인을 선정하고,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등과 국선대리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국선대리인의 권한에 관하여는 대리인에 관한 제59조제4항을 준용한다.

④ 국선대리인의 자격, 관리 등 국선대리인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6) 2024년 기준 세무사 273명, 공인회계사 18명, 변호사 29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1건당 30만원(참석수당 15만원 + 진술수당 15만원)의 수당을 지급받고 있음.

### [연도별 국선대리인 지원건수]

(단위: 건)

| 구 분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
| 지원건수 | 385  | 283  | 256  | 237  | 413  | 396  | 415  | 541  | 499  |

주: (2019년 이전) 이의신청·심사청구 → (2020년 이후) 이의신청·심사청구·과세전적부심사  
자료: 국세청

### [유형별 국선대리인 지원건수]

(단위: 건)

| 유 형       | 2022년 | 2023년 | 2024년 |
|-----------|-------|-------|-------|
| 불복청구 전 신청 | 71    | 99    | 67    |
| 과세전적부심사청구 | 123   | 163   | 152   |
| 이의신청      | 213   | 272   | 273   |
| 심사청구      | 8     | 7     | 7     |
| 합계        | 415   | 541   | 499   |

주: 2024년 말 기준 국선대리인은 총 320명으로 1인당 1.56건 처리  
자료: 국세청

□ 국선대리인 제도는 조세불복 절차에서 경제적 사정 등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영세납세자가 법령이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무료로 국선대리인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제도임.

그러나, 이러한 제도 취지에도 불구하고 불복청구 기한 내에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과세전적부심사 등을 제기하지 못하고 고충민원<sup>37)</sup>을 신청한 납세자의 경우, 현행 제도상 국선대리인 지원

37)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국세환급가산금) ③ 법 제5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충민원”이란 국세와 관련하여 납세자가 법 제5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복청구 등을 그 기한까지 제기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과세관청에 직권으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의 취소, 변경이나 그 밖의 필요한 처분을 해 줄 것을 요청하는 민원을 말한다.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문제가 있음.

- 개정안은 국선대리인 신청 대상 범위를 기존의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에 한정하지 않고, 고충민원 신청인까지 확대함으로써, 조세불복 절차에 접근하지 못한 영세납세자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권리구제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조세불복과 관련한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는 것은 물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영세납세자에 대한 보호 범위를 확장함으로써 국선대리인 제도의 본래 취지를 보다 충실히 구현하려는 취지로 해석됨.

실제로 국선대리인 제도 도입 이후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 비율이 크게 향상되고 있는바, 고충민원 신청인까지 국선대리인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납세자 보호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로 볼 수 있음.

특히,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조세불복 기한 내에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등을 제기하지 못하고 고충민원을 통해 권리구제를 요청하는 경우, 국선대리인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이들에 대한 권리구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국세청에 따르면 세무대리인 없이 이의신청, 심사청구를 진행한 납세자의 인용률은 2024년 기준 7.1%였으나, 국선대리인의 도움을 받은 납세자의 인용률은 22.8%로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국선대리인 선임 여부에 따른 인용률]

(단위: %)

| 구 분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
| 국선대리인 선임 | 31.3 | 16.3 | 21.0 | 22.9 | 21.0 | 17.0 | 20.3 | 16.3 | 22.8 |
| 대리인 미선임* | 14.3 | 13.2 | 10.3 | 7.5  | 8.6  | 8.1  | 5.3  | 5.2  | 7.1  |

주: 대리인이 없는 청구세액 5천만원 ('23. 2. 28. 개정 전 3천만원, '18. 2. 13. 개정 전 1천만원) 이하 청구 건으로 국선대리인 지원대상이 아니거나 지원 신청을 하지 않은 청구 건  
자료: 국세청

□ 다만, 개정안은 고충민원 신청인의 범위를 ‘제52조제3항<sup>38)</sup>에 따른 고충민원 신청인’으로 규정하고 있어 국세환급가산금과 관련한 고충민원인으로만 한정될 수 있으므로, 다른 유형의 고충민원 신청인의 국선대리인 지원 대상과 관련하여 해석상 혼란이 발생할 수 있음.

이는 국세환급가산금과 관련한 동법 제52조 및 시행령 제43조의3에 서만 고충민원 신청인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임.

실제로, 국세 관련 고충민원은 국세환급가산금에 한정되지 않고 본질적으로 모든 고충민원인을 포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령상 정의의 범위가 협소하여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있음.

따라서, 다른 고충민원 신청인의 경우에는 국선대리인 지원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어 ‘대통령령에 따른 고충민원 신청인’으로 수정하여 고충민원인에 대한 정의를 하위법령에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임.

<sup>38)</sup> 「국세기본법」

**제52조(국세환급가산금)**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충민원의 처리에 따라 국세환급금을 충당하거나 지급하는 경우에는 국세환급가산금을 가산하지 아니한다.

□ 참고로, 개정안과 관련하여 국회예산정책처는 국선대리인 선임대상  
에 고충민원인 추가에 따른 재정소요액은 2026년 2,200만원, 2030년  
2,200만원 등 2026년에서 2030년까지 총 1억 1,200만원(연평균 2,200  
만원)으로 추계하였음.

[향후 국선대리인 선임대상 확대에 따른 추가재정소요액]

(단위: 백만원)

| 구분  | 2026 | 2027 | 2028 | 2029 | 2030 | 누적  | 연평균 |
|-----|------|------|------|------|------|-----|-----|
| 소요액 | 22   | 22   | 22   | 22   | 22   | 112 | 22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문 의 처

02)6788-5147

## 참고 1

## 국선대리인 제도개요 및 주요 개정 연혁

### □ 제도 개요

- 영세납세자가 과세전적부심·이의신청·심사청구를 제기한 경우, 국선대리인의 무료 불복대리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

### □ 제도 내용

- (시행시기) '14. 3. 3. 자체 지침으로 시행 ('14. 12. 23. 국기법 §59조의2 신설)
- (국선대리인) 전국 **320명\*** ('24.12월말)

\* 세무사 273명, 공인회계사 18명, 변호사 29명

- (신청대상) 청구세액 **5천만원** 이하의 과세전적부심\*·이의신청·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개인·법인 (상속·증여·종부세 제외)
  - 보유재산이 **5억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인 개인
  - 자산가액이 **5억원** 이하, 수입금액 **3억원** 이하인 법인

\* '19. 12. 31. 법률개정으로 과세전적부심 추가 (국세기본법 제59조의2)

### □ 연혁

| 시행 시기     | 주요 개정 내용                                          |
|-----------|---------------------------------------------------|
| '14.12.23 | ○ 국선대리인 제도 신설                                     |
| '16.12.20 | ○ 국선대리인 지원대상 확대<br>- 심판청구인 추가                     |
| '18.2.13  | ○ 청구세액 기준 완화<br>- 청구세액: <b>1천만원</b> → <b>3천만원</b> |
| '20.1.1   | ○ 국선대리인 지원대상 확대<br>-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 추가               |
| '23.2.28  | ○ 청구세액 기준 완화<br>- 청구세액: <b>3천만원</b> → <b>5천만원</b> |
| '24.4.1.  | ○ 국선대리인 지원대상 확대<br>- 법인납세자 청구인 추가                 |

## □ 제도 개요

- 권리구제가 필요하나 경정청구 기한이나 불복기한의 도과 등으로 법적 구제수단이 마땅치 않은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구제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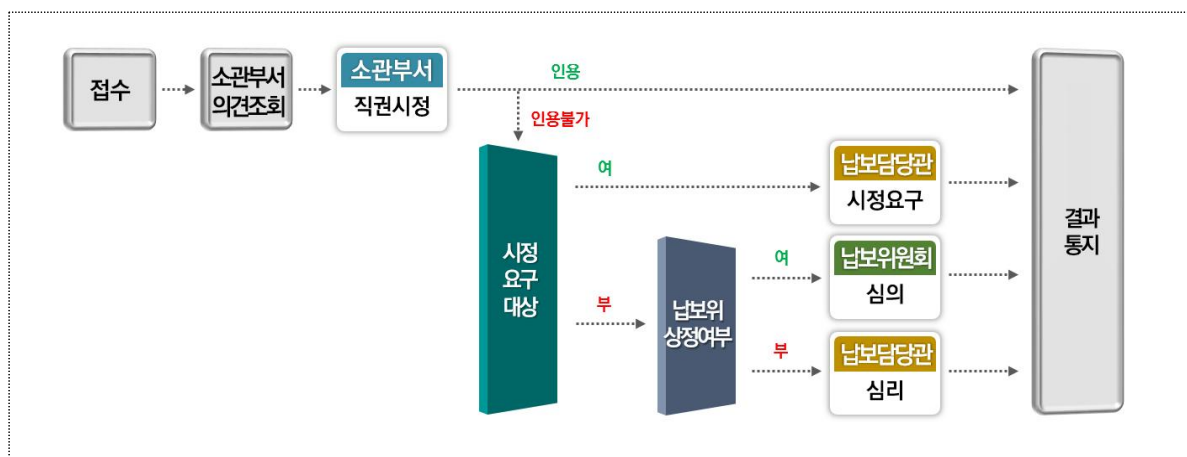
## □ 제외 대상

- **(대상제외)** 불복청구와의 관계를 감안하여 납보사무처리규정(§13)에 규정

- ① 국세기본법, 감사원법, 행정소송법에 따른 불복절차 진행중이거나 결정완료되어 확정된 사항
- ② 국세기본법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된 사항
- ③ 감사원장,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의 감사결과에 따른 시정지시에 의한 처분 사항
- ④ 탈세제보, 외화도피 신고, 세금계산서 미발행 등 세금관련 고소·고발
- ⑤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5조에 따른 통고처분 및 제17조에 따른 고발
- ⑥ 국세기본법 등에 따른 경정청구, 불복 및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기한이 지나지 않은 사항
- ⑦ 민사소송법 등 법률에 따른 소송 등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쟁점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⑧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속하지 않는 법인이 신청하는 경우
- ⑨ 「국세징수법」 제106조에 따라 설치된 국세채납정리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해당하는 사항
- ⑩ 「청원법」에 따른 청원이 접수되어 처리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된 사항

- **(처리제외)** 정당한 사유없이 **2회 이상 반복 신청**한 경우(납보규정 §24) 및 **영세자영업자가 아닌 자의 고액 고충민원**(청구세액 3천만원 이상)으로서 법률·예규 등에 따라 처리대상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 □ 처리 절차



## 5.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요청에 대한 보정요구 및 지연통지 신설 (정부안)

| 현 행                                                                                                                                                                                                                                                                             | 개 정 안                                                                                                                                                                                                                                                                                                                                                                                           |
|---------------------------------------------------------------------------------------------------------------------------------------------------------------------------------------------------------------------------------------------------------------------------------|-------------------------------------------------------------------------------------------------------------------------------------------------------------------------------------------------------------------------------------------------------------------------------------------------------------------------------------------------------------------------------------------------|
| <p><input type="checkbox"/>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납세자의 심의 요청 및 결과 통지(제81조의19)</p> <p>○ 납세자는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에게 세무조사 일시중지 등에 대한 심의를 요청할 수 있음.(제1항)</p> <p><u>&lt;신 설&gt;</u></p> <p>○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을 하고, 납세자에게 그 결과를 2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함.(제2항)</p> <p><u>&lt;신 설&gt;</u></p> | <p><input type="checkbox"/>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요청에 대한 보정요구 및 지연통지 신설</p> <p>○ (현행과 같음)</p> <p>○ (보정요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납세자의 권리보호요청 내용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제2항)</p> <p>○ (종전의 제2항)(제3항)</p> <p>○ (지연통지)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은 납세자의 권리보호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결과통지가 어려운 경우 5일의 범위에서 한차례만 연장할 수 있고, 그 사유를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함.(제4항)</p> <p><input type="checkbox"/> 부 칙</p> <p>○ 시행일: 2026년 1월 1일</p> |

\* 정부안 2025. 9. 3. 제출(의안번호 12651)

- ☐ 개정안은 ①납세자의 세무조사 관련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에 대한 심의 요청 또는 국세청장에 대한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의 결정 취소·변경요청에 미비한 점이 있으면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②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이 납세자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결과통지가 어려운 경우 그 사유를 납세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 현행 「국세기본법」 제81조의19<sup>39)</sup>에 따르면 납세자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제81조의18제2항<sup>40)</sup>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할 수 있고(제1항),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은 20일 이내(이하 “처리기한”이라 함)

39) 「국세기본법」

**제81조의19(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납세자의 심의 요청 및 결과 통지 등)** ① 납세자는 세무조사 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제81조의18제2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81조의18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에 대하여 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 또는 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을 하고, 납세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1조의18제2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대한 결과는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는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81조의18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으로서 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 또는 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의 결정에 대하여 국세청장에게 취소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납세자의 요청을 받은 국세청장은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세무서장 및 지방국세청장의 결정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81조의16제2항에 따른 납세자보호관 또는 담당관은 납세자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 전까지 세무공무원에게 세무조사의 일시중지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기피하려는 것이 명백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제81조의18제2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그 의결로 세무조사의 일시중지 및 중지를 세무공무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세무공무원에 대하여 국세청장에게 징계를 건의할 수 있다.

⑦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요청을 한 납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납세자의 심의 요청 및 결과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0) 「국세기본법」

**제81조의18(납세자보호위원회)** ② 제1항에 따라 세무서에 두는 납세자보호위원회(이하 “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라 한다) 및 지방국세청에 두는 납세자보호위원회(이하 “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세무조사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중 연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이 가장 큰 과세기간의 연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이 100억원 미만(부가가치세에 대한 세무조사의 경우 1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50억원 미만)인 납세자(이하 이 조에서 “중소규모납세자”라 한다) 외의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기간의 연장. 다만, 제81조의8제1항제6호에 따라 조사대상자가 해명 등을 위하여 연장을 신청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중소기업납세자 이외의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범위의 확대

3. 제81조의8제3항에 따른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세무조사 범위 확대에 대한 중소기업납세자의 세무조사 일시중지 및 중지 요청

4. 위법·부당한 세무조사 및 세무조사 중 세무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납세자의 세무조사 일시중지 및 중지 요청

5. 제81조의10제4항 단서에 따른 장부등의 일시 보관 기간 연장

6. 그 밖에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에 납세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결정 결과를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제2항), 납세자는 이에 대하여 재차 국세청장에게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의 결정을 취소 또는 변경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제3항), 국세청장은 처리기한 내에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결정 결과를 납세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규정하고 있음(제4항).

이러한 현행 제도에 대하여는 납세자의 요청(이하 “권리보호요청”이라 함)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입증자료가 없는 등 신청내용에 미비점이 있는 경우 이를 보정할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음.

이로 인해 납세자의 요청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거나 면밀히 검토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며, 결과적으로 결과통지 기한의 제약으로 인해 납세자보호심의위원회에서 공정하고 신중한 심의를 진행하기보다는 처리기한을 맞추기 위한 형식적 심의에 그칠 가능성이 있음.

이에 따라 납세자의 권리구제에 실질적인 한계가 발생하고, 심의 절차 전반에 대한 신뢰 저하와 함께 납세자에게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 제도 운영상 주요한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음.

-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①납세자의 세무조사 관련 권리보호요청 내용 등에 미비점이 있는 경우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이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

고(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 직권으로 보정), ②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한 내에 결과를 통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기간을 5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장하려는 사실과 그 사유를 납세자에게 미리 통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음.

첫째, 납세자의 권리보호요청 내용에 미비점이 있는 경우 보정을 허용함으로써, 납세자보호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이 보다 명확해지고, 이에 따라 심의의 정확성과 공정성이 제고될 수 있다는 점임.

즉, 권리보호 요청인에게 보정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납세자의 주장과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심의 과정에서 실질적인 검토가 가능하도록 하여 심의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음.

이는 납세자의 항변권을 강화하는 동시에, 납세자보호심의위원회가 보다 충실한 심의를 수행하는 데 기여할 수 있어, 처리지연에 따른 기간상 불이익보다 납세자의 권익이 실질적으로 보호되는 효과가 더 클 것으로 기대됨.

둘째, 처리기한 내에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못하여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 그 사실과 사유를 통지함으로써 납세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음.

즉, 보정 요구나 심의 지연이 발생한 경우 그 사유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보정 요구나 결과 통지 지

연을 방지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제도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참고로, 심사청구<sup>41)</sup>의 경우에는 보정요구 규정이 있으며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셋째, 현재도 국세청 훈령<sup>42)</sup>에서 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국세청 내부지침에 불과한 것이므로 납세자 권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이를 법률에 직접 규정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147

41) 「국세기본법」

**제63조(청구서의 보정)** ① 국세청장은 심사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이 법 또는 세법에 적합하지 아니하나 보정(補正)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심사청구인은 보정할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국세청장에게 제출하거나, 국세청에 출석하여 보정할 사항을 말하고 그 말한 내용을 국세청 소속 공무원이 기록한 서면에 서명 또는 날인함으로써 보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보정기간은 제61조에 규정된 심사청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2)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81조(보정요구)**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권리보호요청을 검토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요구 전까지 기간을 정하여 권리보호 요청인에게 그 보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1. 권리보호요청의 신청 취지가 요청서의 작성내용으로는 불분명한 경우
2. 요청서에 신청 이유가 작성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작성된 신청 이유로서는 권리보호요청 취지에 대한 내용과약이 불가능한 경우
3. 요청서에 권리보호 요청인의 기명·날인이 없는 경우
4. 대리인이 납세자를 위하여 권리보호요청을 한 경우로서 그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이 없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사항에 준하는 것으로서 보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0조(지연 통지)**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9 제2항의 기간까지 심의요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하지 못한 때에는 권리보호 요청인에게 그 사유를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 참 고

## 납세자보호위원회 개요

### □ 납세자보호위원회 구성 현황

-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구분에 따른 위원으로 구성
  -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에게는 납세자의 심의요청
  - 국세청장에게는 취소·변경요청

| 구 분   | 운 영        | 시행령                                                                                                                                                                                                                          |
|-------|------------|------------------------------------------------------------------------------------------------------------------------------------------------------------------------------------------------------------------------------|
| 세무서   | 14명 이내의 위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납세자보호담당관 1명</li> <li>· 지방국세청장이 위촉하는 13명 이내의 사람</li> </ul>                                                                                                                           |
| 지방국세청 | 18명 이내의 위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납세자보호담당관 1명</li> <li>·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17명 이내의 사람</li> </ul>                                                                                                                             |
| 국세청   | 18명 이내의 위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납세자보호담당관 1명</li> <li>· 한국세무사회의 장,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장, 대한변호사협회의 장,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하는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로서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각 2명 (비영리민간단체는 4명)</li> <li>· 기획재정부장관이 추천하는 전문가로서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7명</li> </ul> |

- 위원장과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 한차례만 연임가능
- 납세자보호위원회 회의 구성

| 구 분   | 시행령                                  | 운 영                                                                                                            |
|-------|--------------------------------------|----------------------------------------------------------------------------------------------------------------|
| 세무서   | 위원장이 납세자보호담당관인 위원의 의견을 들어 지정하는 사람 5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원장</li> <li>· 납세보호관 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인 위원</li> <li>· 그 외 지정된 위원</li> </ul> |
| 지방국세청 | 위원장이 납세자보호담당관인 위원의 의견을 들어 지정하는 사람 7명 |                                                                                                                |
| 국세청   | 위원장이 납세자보호담당관인 위원의 의견을 들어 지정하는 사람 7명 |                                                                                                                |

※ 사무처리를 위한 간사 1명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국세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

- 회의는 구성된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